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9. 23.(월) / 총 1매(본문1)	
담당부서	주택정책과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박진홍, 최민석, 임유현 ·☎ (044) 201-3318, 3321, 4129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「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.
 -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,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,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,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.
 - 또한,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정책과 박진홍 사무관(☎ 044-201-3318), 정용연 사무관(☎ 044-201-3320), 최민석 사무관(☎ 044-201-33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